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363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7.

판결 선고2024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
부분(D호) 약 25㎡를 인도하고,
나. 3,780,000원 및 2024. 9. 23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2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미납임대료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백웅철

별지